

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상포계 규약

제1조 (목적)

이 규약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(이하 연합회) 상포계 회원에게 상포계 서비스를 맞춤형 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맞춤형 직거래 방식 정의)

- 상포계 서비스를 맞춤형 직거래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상 발생시 연합회 상포계에서 파견된 장례지도사가 상포계원과 상담을 통해 장사물품과 인력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뜻한다.
- 예를 들어 상포계 회원이 미리 수의를 준비했을 경우에는 수의를 제외하고 장사물품을 공급하며, 장례서비스 인력은 문상객 수에 맞춰 제공한다.
- 상포계 서비스를 맞춤형 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리베이트는 균절해야 한다.

제3조 (상포계 회원의 자격)

- 연합회 회원의 조합원은 상포계 회원이 될 수 있다.
- 기업 및 단체 등 법인은 연합회와 협약을 통해 별도의 상포계 회원이 될 수 있다.

제4조 (상포계 가입과 탈퇴 및 제명)

- 연합회 회원의 조합원으로 1회 이상 상포겟돈을 납입하면 연합회 상포계 회원이 된다.
- 상포계 회원은 소속조합을 탈퇴하면 자동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- 상포계 회원이 소속된 조합의 정관에 따라 제명될 경우 자동으로 연합회 상포계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- 상포계 회원이 탈퇴 및 제명될 시 잔여 상포겟돈 중 장례서비스 원가인 76%를 환불한다.

제5조 (상포겟돈)

- 상포계 회원이 매월 납입하는 상포겟돈 3만원은 장례서비스 원가 2만2800원과 조합비 7200원으로 구분한다.
- 조합비중 6000원(20%)은 상포계 회원이 속해 있는 회원조합으로, 1200원(4%)는 연합회 운영비로 납부하여야 한다.
 - 장례서비스 원가는 연합회에서 적립하여 장례발생시 사용하거나 상포계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 시 환불해야 한다.
 - 이 같은 상포겟돈 배분 비율은 연합회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.
- 적립된 장례서비스 원가를 2-1항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연합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6조 (상포계 비용정산)

- 상포계 회원이 상포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포계는 맞춤형 직거래 총 원가에 24/76를 추가하여 총 상포계 비용을 청구한다.

2. 총 상포계 비용에서 상포계원이 기 납입한 상포겟돈은 전액 공제하여 정산한다. 단 기 납입 상포겟돈이 총 상포계 비용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상포계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까지 정산하여야 한다.
3. 상포계는 상포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포계 회원이 속한 조합에 상포계 지원 인건비를 8만 원 이상 지급한다.

제7조 (상포계 서비스 이용 권리)

1. 상포계 회원과 회원의 직계 가족(부부를 기준으로 양가의 직계가족)은 상포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2. 상포계 서비스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,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은 상포계 가입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.
3. 상포계 회원이 속한 조합은 조합원 교육을 통해 상포계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, 상 발생시 장례식에 대한 상세한 내역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.

제8조(조합비의 운용)

상포계 회원이 속한 조합은 상포계 회원이 납부한 회원조합 운영비(6,000원) 가운데 300원(5%)을 공동체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사회, 직장, 단체 등의 공동체 문화를 증진하는 데 사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약은 상포계 서비스 기관인 (주)한겨레가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 요건을 충족시킨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정)

이 규약의 개정 내용은 총회의 개정 승인 후부터 시행한다.

제3조(선불식할부거래업 폐업으로 인한 포괄적 사업양수양도)

연합회 상포계는 2019년 1월 선불식할부거래업 폐업으로 인해 주식회사한겨레가 운영했던 상포계서비스 제공, 조합원 관리, 상포겟돈 관리 등 모든 사업에 대해 2019년 1월 31일 부로 포괄적으로 양수양도 한다.

2022.3.24. 3차 개정본

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